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에서 최저55일분의 임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체류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됐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험상황에서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산재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위험요인을 알리지 않고 보호장비를 챙겨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이 손해배상금과 산재보상금의 이중수령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책임에 따른 배상금액을 노동자가 온전히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산재보상금으로 5천만원이 지급되고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액수가 7천만원으로 결정된다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서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산재보상금 5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된다.

☞한국중립노무법인한솔사무소(031-877-7582-3)

Q 유기용제 '노말렉신'으로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산업재해 인정을 통한 보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불법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산재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에게 산재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장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일차적으로 산재 여부를 관장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노동자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산재로 인정이 되면, 노동자는 우선 입원치료비와 휴업급여(입원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평균 임금의 70%)를 받게 된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후유장애가 남으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4등급이 매겨져 최고 1474일분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 4개월 전甲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액면금 50만원인 가계수표를 받았으나 지급 기일에 은행으로부터 그 수표금지금이 거절되었고, 최근에는 甲의 행방불명이던 甲의 주소를 알게 되어 수표금지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요?

A 수표는 그 형식이 엄격하고 이전방법이 간단하여 고도의 유통

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표상의 법률관계는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표법은 단기의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표법 제51조 및 제58조에 의한 수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보면,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수표는 어음과는 달리 주된 채무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표는 현

금을 대신하여 은행에 지급을 위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어음인 수인, 약속어음발행인과 같은 주된 채무자가 없으므로 여기에 규정된 것은 모두 소구권(상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입니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③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발행인 甲에 대한 귀하의 수표금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인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급이라도 수표금청구소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 ☞문의: 박문우 변호사(031-874-1652)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5과 병원장 김원찬



안 된다. 특히 다이어트 초기 습관 만들기, 즉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면 처음 1~2달은 이전과 같은 생활에서의 친구, 여행 등은 삼가야 한다. 어느 정도의 운동량을 목표로 하는가? 또는 몇 킬로그램의 감량이나 증량을 원하는가? 최소한의 회생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보길 권한다. 3단계, 내게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야 할지 문의하고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구체적이고 훌륭한 계획은 성공의 첫걸음이다. 여기 까지 다 했다면, 그 메모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라. 적어도 하루에 1번씩은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야 한다. 시작은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의정부한방병원 (031-820-7200) www.ujhbanbang.co.kr

다이어트의 사전준비

그냥 무작정 나도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이어트에 돌입한다면 실패의 지름길이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에도 철저한 계획과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 과정이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었다면 절반의 성공이다. 1단계, 다이어트는 왜 하는가? 차분히 생각하고 짧게나마 메모지에 적어보자. 그리고 자주 봐야한다.

중요한 것은 왜 하는가에서 2단계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긍정적인 목표를 세워 보도록 권한다. "내가 얼마까지 다이어트를 해서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한다던가" "더 예뻐져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단다." 이런 것은 확실하고 좋은 동기가 될 수가 있다. 바로 지금 시간을 내서 메모해보자. 2단계, 목표는? 가장 날씬했던 때 몇 키로 였나? 그때는 행복했나? 다이어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호주제가 폐지되면 달라지는 것

- 1. '호주' 사라지고 개인별 신분등록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가 이루어지는 법률적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개별 구성원들이 법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어린 아들, 손자가 어머니, 할머니의 호주가 되고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 가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사라지게 됩니다. 호주제가 사라지면 부계 우선 혈통주의, 여성 차별의식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2. 부모 합의하면 여마 성과 본 사용 가능 무조건적으로 부성(父姓)을 따르게 하는 부성강제 조항이 개정돼 부모의 합의 하에 아이가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한번 쓰던 성과 본을 다른 성과 본으로 바꾸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부모의 합의에 의해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자를 인지하기 전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한 집서 살던 사위와 장모도 가족 생계를 같이 하면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 등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4. 재혼할 때 아이 성 변경할 수 있어 재혼할 때 아이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재혼한 집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성과 자기 성이 달라 겪는 생활상의 불편과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문의: 포천가족·성 상담센터(031-542-3171)

5. 입양한 아이 친생자로 등록 가능 입양된 아이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새로 마련되는 신분등록부에 새 부모가 낳은 아이로 기재되는 친양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친양자 제도의 제한 연령이 7세에서 15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친양자 입양의 조건 중 부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3년 이상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러나 친양자 제도는 친생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6. 미혼모 아이는 엄마 성 그대로 사용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인지(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기의 자식이라고 인정해 효적법상 신고를 하는 것)를 하지 않아 아이가 어머니와 같은 효적에 올라 있다가 친아버지가 나타나 인지신고를 하면 효적이 옮겨지고 성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모가 합의할 경우 아이가 어머니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의도도 태어난 아이는 생부의 효적이 아닌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문의: 포천가족·성 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 포천의료원 소아과 과장 김보선



가 위와 장으로 많이 들어가거나, 분유를 너무 많이 먹거나,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서 위와 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지 않나 추측되고 있습니다. 영아 콜릭의 진단은? 영아 콜릭이라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아기를 진찰한 후 장중첩증, 감돈 탈장, 아기의 눈을 눈썹이 찌르거나 눈에 눈썹이 들어가는 상태, 중이염, 신우염 등의 영아 콜릭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들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아 콜릭의 치료는? 영아 콜릭에 대한 딱 떨어지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똑바로 세워 안아주거나, 아기를 부모의 무릎이나 따뜻한 물방 또는 핫팩 위에 배를 깔고 옆드리게 하면 울음을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좌약을 넣거나 관장을 하여 배가나 변이 나오게 해주어도 울음을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 러브앤키드) ☞포천의료원 (031-539-9114)

영아콜릭(영아산통)이란?

아기가 아무리 달래주어도 계속 우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 중 비교적 흔한 것이 영아 콜릭(산통이라고도 하는데 뺨치는 심한 통증이라는 말)인데 이는 주로 생후 3개월 미만의 어린 영아들에게 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영아 콜릭의 증상은? 영아 콜릭이 오게 되면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 소리는 매우 크고 다소 지속적이고, 한번 시작된 울음은 대개 수시간동안 지속되고, 아기의 얼굴은 발랄하게 상기가

되어 있기도 하고, 입 주위가 창백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기의 배는 상당히 팽창되어 있고 비록 두 다리를 일시적으로 쭉 뻗기도 하지만 주로 두 다리를 배 위로 끌어 당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발은 만져보면 차며 주먹은 꼭 쥐고 있습니다. 아기가 울다가 지쳐 탈진되면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게 되나 방귀를 끼거나 변을 볼 때 동시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울음을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아 콜릭의 원인은? 영아 콜릭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기가 배가 고파 분유를 급하게 빨기 때문에 공기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기구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정부로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관한 회계처리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자

산취득 목적이 아닌 경우의 보조금은 지급받은 시점에서 영입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면 결산시 세무조정이 없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 자산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한후 결산시에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은 유형자산의 해당 과목에 취득원가로 계상을 하고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란 계정과목으로

취득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무상 국고보조금은 익금산입항목이므로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결산시에 익금으로 산입(유보 처분)하고 동일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마이너스 유보 처분)하여 과세소득에는 변동이 없도록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취득한 자산은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한후 이전에 익금으로 산입한 국고보조금에서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금액을 익금불산입(마이너스 유보)하고 동액의 일시상각충당금을 익금산입(유보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되면 국고보조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이 없어지도록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송관수 (02-404-9944)

저렴한 가격! 최고의 서비스 (주) 제일렌트카

"출발 10분전 연락주세요. 24시간 언제든지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소장 조 남 석



- 대리운전기사 수시모집 -

◇ 동부화재 전직원 보험가입 ◇

119 대리운전

080-6666-119

031-5412-119

대리운전전문 / 24시간 항시대기 사고대차환영 / 각종 승용차구비

Tel. 031-541-3107~8 H.P. 010-8675-3108

소장 조 남 석

010-3192-1889